

문서번호	일자리지원 과-6354	주무관	일자리추진팀장	일자리지원과장	주민생활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6.4.29.	노미숙	조성원	안승길	강대형	代고한석	04/29 박경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				



- 2016년 하반기 -
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

2016.4.28.

강 북 구
[일자리지원과]

- 2016년 하반기 -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

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적이고 지속적·안정적인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중점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.

1 추진근거

-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)
- 2016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(행정자치부)

2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**2016. 07. 01.(금) ~ 10. 31.(월)**/ (하반기 4개월)
- 접수기간: 2016. 05. 16.(월) ~ 05. 25.(수)/ (동 주민센터)
- 선발인원: **37명**
- 대상사업: 3개 유형 6개 사업 (행정자치부 기준 선정)
 - 자전거 수리서비스사업(교통행정과) 등 6개 사업
- 근무조건

구 분	근무시간		월 급여수준 (주.월차, 간식비 포함)	시급	간식비
	주	일			
64세 이하	25시간	5시간	813,750원	6,030원	1일 3,000원
65세 이상 <small>*1951.05.15.이전 출생자</small>	15시간	3시간	512,250원	6,030원	1일 3,000원

- 사 업 비: 117,000천원(국비:시비:구비=50:25:25)
 - 국비 58,500천원, 시비 29,250천원, 구비 29,250천원

□ 추진일정

- 2016. 05. 09 : 참여자 모집공고
- **2016. 05. 16 ~ 05. 25** : **신청·접수 (거주지 동 주민센터)**
- 2016. 05. 24 ~ 06. 24 : 실태조사 및 자격확인
- 2016. 06. 29 : 선발자 확정 및 배치
- **2016. 07. 01** : **사업시행** (선발자 안전보건교육: 7월1일)

□ 사업내용

유 형	사 업 명	인원	사업부서
계		37	
【1유형】 시책일자리 사업	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도우미 사업	5	생활보장과
【1유형】 자원재생 사업	자전거 수리서비스 사업	2	교통행정과
【1유형】 자원재생 사업	우산수리 재활용센터 운영	4	일자리지원과
【2유형】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	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	3	일자리지원과
【4유형】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 공간·시설활용사업	우이천변 생태복원 및 수목식재 사업	13	푸른도시과
【4유형】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 공간·시설활용사업	공원관리혁신을 통한 서비스 공원으로 재조성	10	푸른도시과

※ 행정자치부 사업 재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 신청자 접수

□ 신청 대상자의 범위

-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(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사람 포함)
 - ※ 65세 이상 고령자 참여시, 총 선발인원의 20% 이내
 - '17년도 사업부터 65세 이상인 사람은 선발 제한
 - ※ 청년(18~34세) 참여 확대: 선발인원의 5% 이상, 선발우대조치

□ 주요 배제 대상자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
-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%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사람
-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 또는 중도 포기한 사람 (단, 질병, 군복무, 출산(본인) 등의 사유는 제외)
- 1세대 2명 이상 신청한 사람
- 공무원 가족(사립학교 교직원 포함):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
- 공적연금 수령자: 공무원 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을 수령하는 사람
-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
- 신청서,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(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공개동의로 같음)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
-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
- '15 및 '16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사람은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같음
-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사람
- 기타 구청장이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□ 신청 구비서류

-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【붙임 2】
-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(필수) 및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
-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【붙임 3】
- 가점대상 증빙서류: 취업보호·지원대상자, 여성세대주(가장), 장애인 및 가족, 장기실업자 및 휴·폐업자, 북한이탈주민 등
-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

4

대상자 선발

□ 신청 대상자의 범위

-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(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사람 포함)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

《 2016년 기준중위소득 60% 범위(예시) 》

(단위 : 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기준중위소득	1,624,831	2,766,603	3,579,019	4,391,434	5,203,849	6,016,265
60% 범위	974,899	1,659,962	2,147,411	2,634,860	3,122,309	3,609,759

□ 참여자 선발절차

- <선발기준 점수표>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따라 참여할 사람 선발
 -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
 - 1순위 신청자가 미달 할 경우 2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하고, 2순위 까지 미달되는 단위사업은 「다른 단위 사업에 신청하여 탈락한 사람」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 선발 가능
 -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취업보호·지원대상자> 부양가족수> 장애인가족> 기타 자치단체가 정하는 순서
 - 청년(18~34세):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구직자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, 우선선발

□ 선발 기준표

- 선발기준 점수표(별첨)에 따라 점수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점수 순서에 따라 참여할 사람을 선발하고 “우리 구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선발 기준”을 마련

5

임금 및 근로조건

□ 근로자의 법적 지위: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(제2조)상의 「근로자」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『근로자』로 봄

□ 임 금

- 임금단가: 참여자 1인당 1일 인건비
 - 시급: 6,030원 × 5시간 = 30,150원
 - 시급: 6,030원 × 3시간 = 18,090원
 - 주차·월차수당 및 간식비 등 별도 지급: 1일 3,000원
- 지급방식
 - 월급(다음달 5일이내)으로 지급. 단, 임금지급일(5일)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지급
 -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고, 임금명세서를 교부함.

□ 근로 조건

- 근무시간
 - 65세미만 주 25시간(1일 5시간), 65세이상 주 15시간(1일 3시간)
- 급여수준: 시급 6,030원 (증 450원)
 - 1일 5시간 근무자: 30,150원 (주·월차 간식비 포함시 월평균 81만원)
 - 1일 3시간 근무자: 18,090원 (주·월차 간식비 포함시 월평균 51만원)
- 유급 주 휴일, 연차 유급휴가
 -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에게는 주1회 유급휴일(일요일 원칙)을 부여
- 공적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
 - 예비군·민방위 교육훈련, 구직상담 및 직업능력개발(훈련)프로그램 참여 등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, 교육기간(시간)에 대해서는 일당(기간급)에 준한 임금을 지급
- 근로계약서 작성: **【붙임 4】**
 - 근로계약 이후 재산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 해지됨을 명시하여 사후 민원 등 분쟁소지 방지

6

참여자관리 및 지도, 감독

□ 신청자 및 선발자의 사후관리

- 부적격인 사람의 선별·조치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수혜 금지
 - 사업시행 중 부적격인 사람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배제 조치
- 근무자 명부 등 관리 및 사용증명서 발급
 - 사업시행기관은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2조에 의거 사업장별 근무자 명부를 작성·비치하고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.
 - 【붙임8】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자명부
 -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30일 이상 참여한 근로자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를 포기하였거나 사업이 종료된 후 근무경력 확인을 요구할 경우
 - 사업시행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“근무확인서”를 발급. 【붙임9】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무확인서

□ 4대 보험 의무 가입

- 국민연금: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
- 건강보험: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(직장가입자)
- 고용보험: 「고용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
- 산재보험: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

□ 사업장 관리

- 사업 목표량 부여
 - 사업시행 감독자는 근로자에게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달성할 목표량을 제시하여, 근로자가 이의 달성을 위해 근로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부서별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
- 사업장 지도·감독
 -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은 작업시작 전에 실시
 -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·감독 실시
 - 현장점검: 시행사업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·관리

○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제재

- 대상자: 상습적인 결근, 지각, 조퇴, 음주, 근무지 이탈,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 또는 감독자 지시 불응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사람은 구청장이 사업참여를 불허 할 수 있음
-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, 근로능력 미달인 사람 등

□ 사업장 안전지도 및 감독

○ 사업담당자 및 참여자 교육 강화

- 사업담당자: 단위사업 담당자를 사업 시작전 교육 및 필요시 수시
- 사업참여자: 사업 시작 전, 월 1회(2시간 이상) 이상, 작업 시작전·후 및 필요시 수시

○ 안전 책임자 지정·운영 및 임무

- 사업장 안전책임자 지정·운영: 당해 사업장 및 현장을 총괄 감독하는 사람을 안전책임자(사업담당 부서장)로 지정하여 사업장 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임무 부여
- 사업장별 사업담당공무원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

○ 안전보건교육: 사업시작일 / 강사 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○ 안전보건점검: 주관 - 사업담당공무원 또는 안전책임자

- 사업장·참여자별 및 작업환경에 맞는 특성 교육 실시

□ 근로자 보건관리

○ 건강검진: 사업참여 후 1개월 이내 실시

○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

- 인력투입 전 고령자·허약자·개인질병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 후 작업배치, 현장에 구급함 비치

○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참여 1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통보서 제출

- 단, 2015년 및 2016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할 경우 대체 가능

동 주민센터 협조사항

- 참여자 모집 시 붙임의 공고문【붙임 1】을 많은 구민이 볼 수 있는 주요장소 부착
- 접수창구 운영 및 인력지원
 - 접수단계에서 소득과 재산이 초과한다는 이유로 접수 거부 금지
(모든 신청자는 선발 심사과정을 거쳐 참여 여부 결정)
 - 사업추진계획 등을 숙지 후 접수(안내)
- 신청서 작성 안내 및 확인란(뒷면) 기재사항 확인(조사)
- 신청(접수)서류는 다음날까지 일자리지원과로 제출

붙임 1. 참여자 모집공고(안) 1부.

2.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금융거래정보동의서 1부.

3. 근로계약서 1부.

4. 선발기준 점수표 1부. 끝.